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4-26호

「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7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상주시의회가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 (안 제1조)
- 정의 (안 제2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(안 제3조)
- 적용 범위 (안 제4조)
- 제외 대상 (안 제5조)
- 조사 방법 (안 제6조)
- 조사결과 공개 (안 제7조)
- 예산지원 (안 제8조)
- 비밀준수 (안 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1일까지 상주시의회의회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kjh4400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건	비 고